

1

#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sup>1)</sup>(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sup>2)</sup>경희대학교, <sup>3)</sup>강릉원주대학교, <sup>4)</sup>연세대학교,  
<sup>5)</sup>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sup>6)</sup>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김 경 년<sup>1,3)</sup>, 김 윤 진<sup>1,6)</sup>, 김 주 아<sup>1,4)</sup>, 김 지 연<sup>1,2)</sup>, 김 각 균<sup>1,5)</sup>, 이 재 일<sup>1,5)</sup>, 신 제 원<sup>1,2)\*</sup>

## ABSTRACT

###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Present and Future

<sup>1)</sup>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School of Dentistry, <sup>2)</sup>Kyung Hee,  
<sup>3)</sup>Gangneung-Wonju National, <sup>4)</sup>Yonsei, <sup>5)</sup>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up>6)</sup>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yung-Nyun Kim<sup>1,3)</sup>, Yun-Jin Kim<sup>1,6)</sup>, Ju Ah Kim<sup>1,4)</sup>, Ji-Youn Kim<sup>1,2)</sup>,  
Kack-Kyun Kim<sup>1,5)</sup>, Jae Il Lee<sup>1,5)</sup>, and Je-Won Shin<sup>1,2)</sup>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DEE) was established in 2007 to provide the quality assurance in dental education. The KIDEE has been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Jan. 2015 for 5 years.

KIDEE had accredited basic dental education programs of all 11 Korean dental schools. The dental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for dental schools, to ensure the quality of dental practice and most of al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ly compatible system of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he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is supported by voluntary service of many dental professionals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dental education program in all institutions.

The accreditation by KIDEE let the students and the dentists be taught with assured education program and the all Koreans be cared by the qualified dentists. A quality education system thus provides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dental health professionals to meet the workforce needs of the nation. Ultimately, this should result in quality oral health care for the public. Finally, by specifying the competencies of graduates, the standards will define the scope of dental practice. This may serve to define the profession of dentistry and differentiate it from other health professions, or to differentiate among the specialties in dentistry in the case of advanced dental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Dental Accreditation; Dental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The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Je-Won Shin, DDS, MSD, PhD.

Department of Oral Anatomy and Developmental Biology,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el : +82-2-961-0351, Fax : +82-2-960-1747, E-mail : shinjw@khu.ac.kr

본 논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서론

### 1. 인증평가제 정의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 치의학 교육 평가원(KIDEE; 이하 치평원)'이 정부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치의학교육기관의 치의학교육 현황과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치의학 평가인증제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국가면허를 취득한 후 실무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치과의료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질 보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는 관련 평가기관이 주관이 되어 상호 동등한 입장과 지위에서 동료평가(peer assessment)방식에 의한 평가로서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전문적 평가활동이다<sup>1)</sup>. 또한 인증을 위한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인증 혹은 불 인증으로 판정한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격상하고 유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평가인정기관에서 만든 인증기준(standards)을 사용하여 자체평가(self-review)와 동료평가에 기반하여 각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합의에 의한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Continuing Quality Improvement) 과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졸업생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성취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보장(Competency-based Assurance)을 받게 된다<sup>2)</sup>.

### 2. 치평원 역사와 설립배경

1922년 최초의 근대 치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된 국내 치의학 교육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으나, 해방 이후부터 1965년까지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만이 유일한 치의학 교육기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증가하는 치과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각 지역마다 꾸준히 설립되어 치과대학의 수는 지금까지 모두 11개가 되었다. 이는 국내 치의학교육계가 치의학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서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오면서, 치의학 교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긴밀성은 치의학 교육계가 최근까지 치의학 교육의 인증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를 도외시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2007년 고등교육 부문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 교육법의 발효에 따라 치의학교육계에도 최초로 치의학교육 인증평가기구인 치평원이 설립되었으나, 그간 인증평가의 필요성이 간과되어 온 국내 치의학 교육계의 치의학 교육 평가의 역사는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평원은 설립준비과정에서 여러 선진국의 치의학교육 인증평가기준을 국내 치의학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치의학교육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평가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은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구의 설립이 의료인의 사회적인 역할을 담보한다는 근본적인 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의 양성에 대한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비롯하여 인증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모든 선진국의 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 치의학교육계의 유일한 인증평가기구인 치평원의 인증평가 활동이 필히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 II. 본론

### 1. 치평원 현황

치평원은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되었다. 설립 후 2년 여에 걸쳐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인증평가 과정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준을 사용하여 국내 11개 전체 치과대학(원)을 대상으로 1주기 인증평가를 마쳤다. 치평원은 치의학 교육의 선진국인 미국(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CoDA) 및 영국(General Dental Council, GDC)의 자체평가연구 및 국내의 기관 평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인증평가 기준과 프로그램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 등의 인증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2008년 잠정적으로 필수 29항목, 권장 42항목을 포함하는 '치과대학(원) 인증평가기준'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치평원은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인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9년 1월 20일에는 인증평가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ADA 및 CoDA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미국의 CoDA 및 영국의 GDC의 인증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교육관련 법률, 국내교육제도, 국내의료 관련법, 의료 환경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평가 절차와 방안을 도출하였다. 2009년 2월, 1주기 인증평가 시작 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의 협조를 얻어 예비 인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치의학교육에 알맞은 5개 영역(기관의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의 55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된 1주기 인증기준을 확립하였고, 2009년 10월에 공표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준을 사용하여 1주기 국내 11개 전체 치과대학(원)에 대한 인증평가를 모두 마쳤다.

### 2. 치평원 재정

#### 1)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238,959	339,578	356,374	293,480	388,000

※ -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합한 '기관의 모든 예산 총합계' 기재  
 - 평가인증원의 사업이 '평가인증 사업회계'만 있을 경우, 평가인증 사업회계의 예산액 기재

#### 2) 평가인증 재정

##### 1)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고보조금(A)	70,000	45,000	45,000	45,000	32,000
자체부담금(B)	30,000	50,000	45,000	45,000	48,000
합계(C=A+B)	100,000	95,000	90,000	90,000	80,000
자체부담비율(B/C×100)(%)	30	52.6	50	50	60

특별기고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고보조금(A)	70,000	45,000	45,000	45,000	
자체부담금(B)	57,363	120,147	128,484	57,834	
합계(C=A+B)	127,363	165,147	173,484	102,834	
자체부담비율(B/C×100)(%)	45	72.8	74.1	56.2	

(2) 수수료 단가 : 1개교당 2,300만원

(3)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

(단위 : 천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수료	-	46,000	92,000	115,000	-

※ 매년도 결산 기준으로, 실제 수수료 수입액 기재

### 3. 조직현황

#### 1) 조직도



#### 2) 조직 구성현황

특별기고

조직(직위)	구분	성명	소속	임기(기간)	비고
이사장	당연직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2014.05~직책임기	치협회장
이사	추천	신제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치평원장
		박준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2014.06~직책임기	대한치의학회장
		류인철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직책임기	대한치과병원협회장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2.12.12.~직책임기	치과의사협회 국시연구소장
		박영국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11.19.~직책임기	치과대학(원)장협의회장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직책임기	치과대학교육협의회장
		신동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1.07~2015.07	국시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최재갑	경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6~직책임기	치의학교육학회장
		김관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07.12~	이사회
		김경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12~2017.12	이사회
		김성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12~2017.12	대한치의학회
		박병건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이사회
		박봉수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이사회
		조혜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이사회
홍석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이사회		
홍순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4.12~2017.12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천재식 박덕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2013.09~2017.02		
원장	신제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실행위원회	신제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2017.02		
	김주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2017.02		
	김경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박병건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박영국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신동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최성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최형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홍석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인증평가위원회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7~2017.06		
	안석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7~2017.06		
	김명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김주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김지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방재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서정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신홍인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안동국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이유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이경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전양현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전영미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7~2017.06		
	최진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최항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07~2017.06		

특별기고

시험위원회	신동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심준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김주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2017.02	
	마득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박병건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안창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이해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정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조경모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졸업후교육위원회	박영국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김철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국윤아	가톨릭의과대학교	2014.03~2017.02	
	이재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장기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2017.02	
	조용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최종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평생교육위원회	최성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최형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안중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이병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2014.03~2017.02	
	이삼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4.03~2017.02	
	이재목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허익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4.03~2017.02	
인증기준위원회	고광준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2.11.06.~2015.11.05	
	최재갑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2.11.06.~2015.11.05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2.11.06.~2015.11.05	
	김경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2.11.06.~2015.11.05	
	김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2.11.06.~2015.11.05	
	박준봉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2.11.06.~2015.11.05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2.11.06.~2015.11.05	
	반재천	충남대학교	2012.11.06.~2015.11.05	
	김민강	호주 시드니 대학교	2012.11.06.~2015.11.05	
	사무국	김경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2013.09.04.~
김윤진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08.10~	연구원
서윤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11.07~	사무원
지영아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14.04~	객원연구원
김지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14.04~	객원연구원

#### 4. 정부기관 인정 현황

##### 1) 정부인정기관 지정

치평원은 2015년 1월,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심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치의학 프로그램(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역량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치위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프

로그랩(학부, 학과, 전공)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2)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1) 고등교육법

가)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일 2009.1.1]

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시행일 2009. 1. 1]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사면허 자격 부여[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 공포 후 5년 유예하여 2017. 2. 2. 부터 시행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5. 해외 현황

1) 국제표준화

국제화와 더불어 치의학과 학생, 교육자, 치과의사, 프로그램 및 공급자 등 의료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 질 보장 및 인증 프레임 워크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증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시장개방과 국제적 이동이 급증되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년 12월에 UNESCO / OECD에서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CBHE)의 질 보증을 위한 포괄적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외부 질 보증 기관은 교육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sup>3)</sup>.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인증기관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준거 및 절차를 확립하여 학생이 외국 대학에 등록하거나 고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질적 수준의 점검 과정

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평가인증제 국제적 경향은 대학교육에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자격취득 조건과 연계되고 있고 인증의 획득은 국내외 학점교류, 학위 및 취득, 자격증 상호인정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외부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2) 국제적 평가기구 인정의 동향

현재 치의학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국제 치과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EU와 ASEAN 참여국가들 간의 인력교류 자유화(EU-시행, ASEAN-시행 준비 중)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각 ADEE와 SEAAD를 중심으로 EU와 ASEAN 역내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 대륙의 국가들(미국, 캐나다)은 이미 미국 ADA의 CODA가 주축이 되어 ADEA 소속 북미 치의학교육 기관들 간의 치의학교육 상호인증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sup>4, 5)</sup>. 2007년 최초로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도 인증협의체의 구성 및 교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면허관련 공식적인 협의체인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sup>6)</sup>가 2014년 9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13개국 및 20개 이상의 지역(jurisdictions)이 참가하며 치평원이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인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인증은 이러한 인력교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6. 치과의사 역량중심 인증체제 구축

### 1) 역량(competency) 정의

역량이란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직업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치료 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하고 이 수준을 평가하여야한다. 치평원은 국내 치과대학(원)의 교육 목표 및 역량, 해외 유관기관의 역량 분석을 하고,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공청회를 통해 개발한 역량을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캐나다, 호주의 역량 개발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고 코멘트 회신을 받아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개발하여 <표1>과 같이 7영역과 59개의 세부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sup>7)</sup>.

<표1> 치평원이 개발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영역	세부역량	비고
1. 전문직업의식	1.1. 치과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다.	1

특별기고

영역	세부역량	비고
	1.2.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2
	1.3. 자신의 업무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의 진료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1.4. 확대, 방치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전문가적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	4
	1.5. 환자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전 동의와 같은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5
	1.6. 치과진료와 관련된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6
	II. 의사소통능력	2.1. 전문인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사 관계를 정립하고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2. 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환자중심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8
2.3. 진료팀과 전문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9
2.4. 진료팀 외에 접촉하는 업무 관련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0
III. 진단 및 치료 계획	3.1. 환자의 주요 호소증상을 파악하고 병력을 청취할 수 있다.	11
	3.2.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12
	3.3.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구내외 진찰, 임상검사,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13
	3.4. 치아 및 주위조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14
	3.5. 악안면외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15
	3.6. 구강내 연조직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16
	3.7. 부정교합과 치아안면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17
	3.8. 환자의 전신질환이 치과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고 있다.	18
	3.9.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들의 행동·심리적 특성과 구강 내 성장변화에 부합되는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19
IV. 치료	4.1.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시술을 할 수 있다.	20
	4.2. 치관내수복(in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21
	4.3. 치관외수복(ex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22
	4.4. 치수와 관련한 급성통증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3
	4.5. 기본적인 근관치료를 할 수 있다.	24
	4.6. 치석제거술·치근활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25
	4.7. 만성치주염에 대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수 있다.	26
	4.8. 치주건강 유지치료를 할 수 있다.	27
	4.9. 단순 연조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28
	4.10. 국소마취를 할 수 있다.	29
	4.11. 약물을 이용한 행동조절을 할 수 있다.	30
	4.12. 단순 발치를 할 수 있다.	31
	4.13. 단순한 외과적 발치를 할 수 있다.	32
	4.14.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약을 선택하고 처방할 수 있다.	33
	4.15. 단순한 절개와 배농을 할 수 있다.	34
	4.16. 생검을 위한 단순한 조직 절제를 할 수 있다.	35
	4.17. 보철을 위한 단순한 외과적 시술을 할 수 있다.	36
	4.18. 단순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술할 수 있다.	37
	4.19.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의 기공작업을 지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38

영역	세부역량	비고
	4.20. 기본적인 심미치료를 할 수 있다.	39
	4.21. 교합을 조정할 수 있다.	40
	4.22. 악관절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41
	4.23. 공간유지장치와 단순한 가철 교정장치를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다.	42
	4.24. 치과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술을 할 수 있다.	43
	4.25.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44
V. 치료관리 및 정보활용능력	5.1. 의료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45
	5.2. 진료행정, 재정 및 인력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46
	5.3. 감염관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47
	5.4. 치과진료와 관련된 직업적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	48
	5.5.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다.	49

## 2)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구성

### (1) 전문직업의식

전문가적 행동과 수월성 추구, 사회환경적 책무로서 치과의사는 자신의 분야에서 근거에 기반한 최신의 지식을 유지하고 이 지식을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치료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전문직 집단을 포함해서 치과의사는 항상 환자의 진료와 지역사회활동에 있어 사회환경적 책무를 이해하고 윤리원칙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는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권, 복지 등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회구성원이자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의사소통능력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전문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대인관계 기술 및 심리학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타인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직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 환자, 환자보호자, 진료보조자 등 업무 관련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3) 진단 및 치료 계획

임상정보 수집, 구강 및 전신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 및 전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의학적·심리적·사회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병력을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구강 및 전신 검사를 시행하거나 처방하고 그 소견을 해석할 수 있으며, 병력 및 검사소견 등을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4) 치료

일차적 진료를 통한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악안면에 발생한 단순한 이상을 일차적으로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강질환예방, 구강건강증진, 구강보건교육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구강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5) 치료관리 및 정보활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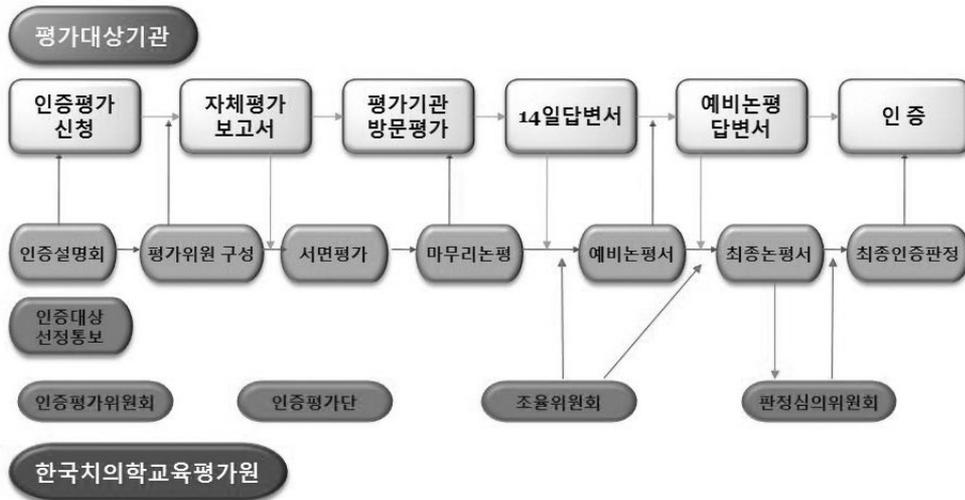
체계적인 진료관리, 정보활용능력으로서 치과의사는 진료실에서 체계적인 진료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 진료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하며, 습득된 정보를 비평적, 과학적,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7. 평가·인증기준

평가 영역	평가부문	세부기준
1. 프로그램의 운영	1.1. 직전 인증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대응	1
	1.2. 프로그램의 목적	3
	1.3.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역할	3
	1.4. 조직과 운영	6
	1.5. 전략과 계획	3
	소계	16
2. 교육과정	2.1. 교육성과	5
	2.2. 교육과정 설계	5
	2.3.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2
	2.4. 환자기반 임상교육	5
	2.5. 교육과정성과의 평가	4
	2.6. 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전문대학원기준)	2
소계	23	
3. 학생	3.1. 학생선발	4
	3.2. 학생지도	8
	3.3. 학생재정관리와 복지	5
	소계	17
4. 교수	4.1. 전임교수	2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학술활동	6
	4.3. 교수 개발 및 지원	4
	소계	12
5. 자원	5.1. 교육시설 및 자원	4
	5.2.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2
	소계	6
6. 임상교육 환경	6.1. 진료시설의 확보 및 관리	9
	6.2. 임상교육기구의 조직구성	5
	6.3. 환자중심의 진료	5
	소계	19
합계		93

## 8. 인증평가 운영 절차

인증평가 절차는 인증평가 시행 계획, 자체평가, 방문평가 실시, 조율 및 판정으로 구분되며 이는 [인증평가 인증규정]과 [인증평가 표준절차 지침서]에서 정한다<sup>9)</sup>.



〈치의학교육 인증절차〉

### 1) 자체평가연구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인증평가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부터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 2) 자체평가연구 절차

- 가) 자체평가연구의 준비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과 자체평가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 나) 자체평가연구의 실시 : 연구위원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설명회를 실시한 후 자체평가연구 지침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 다) 자체평가연구의 결과보고서 작성 :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수집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평가영역별로 수집한 자료를 위원회가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수정 및 보완하고 완성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원 사무국에 제출한다.
- 라) 자체평가연구 결과의 활용 : 평가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관계자에게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3) 서면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의 기술을 통해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방문평가

치과대학(원)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감사나 실사가 아니다.

5) 조율 및 판정

인증평가단은 마무리논평서를 기초로 하여 피평가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논평서를 작성한다. 공정한 인증평가를 위하여 치평원은 조율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평가단 간 기준 적용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 판정심의회위원회는 최종논평서를 검토·심의하고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판정의견서에 대하여 판정·승인하고 판정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다.

6) 평가·인증 결과 유형

유형	판정기준	세부기준 성취률
인증(6년)	- 교육기관이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D)없고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90%
인증(4년)	- 교육기관이 운영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와 성취가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N)이 소주 존재하고, 치의학 교육에 현실적인 장애가 없으며, 세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이 필요한 경우	80%
인증(2년)	- 세부기준 수준에서 보완(N)이 다수 있어 인증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 세부기준 수준에서 결함(D)이 존재하지만 보완(N)이 없어도 치의학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없는 경우	70%
인증(사유제시)	- 신설대학과 같이 전체 프로그램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거나 세부기준 성취률이 현저히 미달하여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1년을 인증하고 사유를 제시	60%
인증불가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0% 미만

9. 연도별 평가·인증 신청대학 및 결과

연도	신청대학	평가·인증 결과				비고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2008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인증(2년)				예비 인증평가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증(2년)				
2009						
2010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특별기고

연도	신청대학	평가·인증 결과			비고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2011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년)			
	-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2012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년)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인증(4년)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4년)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증(4년)			
2014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진행 중

※ 2012년 까지 대상대학 11개교 모두 인증

### Ⅲ. 결론

#### 1. 인증평가 효과

타당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통해 치과대학(원)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학생은 학문분야별 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역량이 함양되고 졸업 후 근무하게 될 병·의원은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채용하여 경쟁력 강화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국가적 경쟁력이 향상되어 치과의사 면허의 국제통용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 2. 발전을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치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치의학 영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첫째,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인증기준 제정과 공표한다. 국내외 인증기구의 인증 기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요구와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둘째,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한다. 평가 인력을 확보하고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 질을 향상시키고, 인증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인증 가이드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대학의 인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셋째, 치의학 교육 개선과 지속적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치의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 및 치평원과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졸업생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증대하고 국가 간 치과의사 교류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다섯째, 인증기구로서 전문성을 확보한다. 재정 자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인된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여섯째,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치의학교육프로그램 중 현재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1개 치과대학(원)만 평가인증제를 시작하고 있지

만 그 외 졸업후교육과정(전문의, AGD 프로그램)과 함께 인접 프로그램인 치위생과와 치기공과 프로그램의 질 보장을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치의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한다. 국제 치의학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 등 해외인증평가기구와의 교류 확대 및 ISDR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치과의사면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참고 문헌

1. Bandaranayake RC. Editorial. Institutional accreditation: a long overdue process. Bulletin of the Kuwait institute for medical specialization 2007;6:51-54.
2. Chang HS, Lee SH. Establishment,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new korean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J Korean Med Sci 2012;27:S61-69.
3. Eaton JS. An overview of U.S. accreditation.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2011.
4. South East Asia Association for Dental Education (SEAADE). About us, Objectives[Internet]. [cited 2015 Jan 20]. Available from: <http://www.seaade.org/>.
5.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CODA). Accreditation [Internet]. [cited 2015 Jan 20]. Available from: <http://www.ada.org/coda>.
6.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 Event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verview[Internet]. [cited 2015 Jan 20]. Available from: <http://isdronline.org/>.
7.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Accreditation[Internet]. [cited 2015 Jan 20]. Available from: <http://www.kidee.org>.
8. KIDEE.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 Kor J Dent Educ 2009;2(1):5-23.